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7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활용 분야에 치우쳐 왔던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다변화 필요성 대두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발판삼아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평화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과 올림픽 유산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출연기관 설립

2.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유산 계승 발전
-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 설립 및 운영(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사 업(안 제3조)

-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 국내외 회의, 인센티브 관광 및 전시 행사 등 육성 지원
- 교육·홍보사업
- 평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임 원 (안 제5조)

- 이사장 포함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둠
-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세부사항 정관으로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 법」 제32조

○ 예산조치: 2021년 추경에 기본재산(1억원)과 운영비(414백만원) 반영계획

※ 2021년 ~ 2025년까지 5년 비용 [붙임3] 비용추계서 참조

○ 합 의: 해당없음

○ 기 타

- 규제심사 : 행정규제범위 미포함(기획실-3362, ‘21. 3. 11.)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3362, ‘21. 3. 11.)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0691, ‘21. 3. 11.)
- 입법예고 : (‘21. 3. 12. ~ 4. 1.) 결과, 접수 의견 없음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평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평창평화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창평화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도시 및 평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2. 국내외 회의, 인센티브 관광 및 전시 행사 등 육성 지원
3. 교육·홍보사업
4. 평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6. 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수행하는 수익사업
7. 국가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무
8.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올림픽 유산사업,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소속 부시장 2명 이내로 하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재단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 평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으로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각 단위 업무의 팀장은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편성 등)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결산) 재단은 법 제19조 전단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법 제19조 후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4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재단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항 생략

□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평창평화센터의 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평화센터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인건비 및 재단운영비는 군비 부담
- '24년부터 발생하는 평화 테마파크 운영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처리
- 보조금, 후원금 등 기타수익금은 추계에서 제외

나. 추계 결과

- 평창평화센터 타당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비용(인건비+운영비)을 추계한 결과,
- '21년에는 기본재산 100백만원 포함 514백만원, '22년, '23년은 828백만원이 평화 테마파크 완공되는 '24년 이후에는 연간 1,726백만원의 비용이 발생
- '24년부터 평화 테마파크 운영에 따라 연 평균 1,434백만원의 수입 발생하여 **군 세입처리**

※ 사업별 세부내역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조

다. 자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충당하고자 함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01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세 입	-	-	-	1,434	1,434	2,868
평화 테마파크 운영 수익금	-	-	-	1,434	1,434	2,868
세 출	514*	828	828	1,726	1,726	5,622
인건비	218	435	435	907	907	2,902
운영비	196	393	393	819	819	2,620
기본재산	100					100
재원 조달	514	828	828	1,726	1,726	5,62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14	828	828	1,726	5,622
	지방세	514	828	828	1,726	5,62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1년도 세출은 센터 설립예정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인건비 및 운영비와 기본재산 출연금

※연간 군 지원금(운영비 및 인건비) 산출

○ 1단계('21 ~ '23년)

- 연간 군 지원금(인건비+운영비)(※총 9명 중 파견공무원 2명 제외 7명 인건비)

		1단계 ('21~'23)	(단위: 백만원)
계		828	
인건비		435	인건비 합산
시설운영비		318	인건비의 73%
기타(센터 예비비)		75	인건비+시설운영비의 10%

○ 2단계('24년 이후)

- 군 지원금(인건비+운영비)(※사무국장 포함 14명 인건비)

		2단계 ('24년 이후)	(단위: 백만원)
계		1,726	
인건비		907	인건비 합산
시설운영비		662	인건비의 73%
기타(센터 예비비)		157	인건비+시설운영비의 10%

[참고]

인건비 산출내역

「2021 평창군 일반임기제보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제1항 참조

(단위:천원)

구 분	직급	상한액	하한액	산출기초	1단계(2021 ~ 2023년)		2단계(2024년 이후)	
					인원(명)	금액	인원(명)	금액
총계					7	434,809	14	906,687
기본급 (합계)	하한액의 120% ×인원수				7	362,767	14	760,390
기본급	5급 상당		61,684	74,021×1명			1	74,021
	6급 상당	76,686	51,098	61,318×1명 61,318×3명	1	61,318	3	183,954
	7급 상당	62,675	44,514	53,417×3명 53,417×5명	3	160,251	5	267,085
	8급 상당	54,984	39,222	47,066×3명 47,066×5명	3	141,198	5	235,330
수당 (합계)					7	72,042	14	146,297
가족수당 (소계)					7	6,720	14	13,440
배우자	40×12월×7명 40×12월×14명				7	3,360	14	6,720
부양가족 (2명기준)	20×12월×14명 20×12월×28명				7	3,360	14	6,720
정액급 식비	140×12월×7명 140×12월×14명				7	11,760	14	23,520
직급 보조비 (소계)					7	12,780	14	26,940
	5급 상당			250×12월×1명			1	3,000
	6급 상당			165×12월×1명 165×12월×3명	1	1,980	3	5,940
	7급 상당			155×12월×3명 155×12월×5명	3	5,580	5	9,300
	8급 상당			145×12월×3명 145×12월×5명	3	5,220	5	8,700
대민 활동비	50×12월×7명 50×12월×14명				7	4,200	14	8,400
연가 보상비	362,767×86%×1/12×1/30×1명×10일 760,390×86%×1/12×1/30×1명×10일					8,666		18,165
초근 수당	12×27시간×12월×7명 12×27시간×12월×14명				7	27,216	14	54,432
고용 보험	100×7명 100×14명				7	700	14	1,400